

수도시설 운영·관리업무 위탁계약

[] 체결

[] 해지

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	
위탁기관	기관명(담당부서명)		
	성명(대표자)		
	주 소 (전 화:)		
수탁기관	기관명(사업자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	
	주 소		
위탁내용	위탁구분	[] 단순위탁 [] 복합위탁	계약(해지)일
	위탁기간 년(년 월 일 ~ 년 월 일)		
	위탁범위		
	위탁(해지)사유		

「수도법」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시설 운영·관리업무 위탁계약서의([]체결 []해지)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위탁계약서 사본 1부(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)
작성요령	위탁구분 및 위탁범위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재합니다.